



밀피타스 시

455 EAST CALAVERAS BOULEVARD, MILPITAS, CALIFORNIA 95035-5479
일반 정보 : 408-586-3000, TDD: 586-3013, www.ci.milpitas.ca.gov

사업자 면허 소지자 귀하 :

2017 년 2 월 21 일, 밀피타스 시의회는 시 전체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 292호를 채택했습니다. **2021 년 7 월 1**일부터 시의 사업 허가 요건이 적용되거나 시에 사업 시설을 유지하는 고용주는 밀피타스에서 일주일에 최소 2 시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직원에게 **시간당 \$ 15.65** 인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
매년 7 월 1일부터 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베이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근거한 최저 임금을 조정합니다. 조례 292호에 명시된 최저 임금 요건은 성인과 일주일에 2 시간 이상 일하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

고용주는 다음 요건을 알고 있어야합니다.

-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과 권리를 알리는 별첨 최저 임금 공식 통지 및 최저 임금 근로자 권리를 직장에 게시해야 합니다.
-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한 모든 시간을 기록하고 4 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조례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차별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- 고용주는 고용 시 직원에게 고용주의 이름,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
시의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직원은 조례에 따라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. 직원은 조례 위반으로 고용주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밀피타스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. 시에서는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급여 기록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복직 명령, 불법적으로 삭감한 최저임금 지급 명령 및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최저 임금 요건 위반을 집행할 것입니다.

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.

www.ci.milpitas.ca.gov/milpitas/departments/minimum-wage/.

(408) 535-8430 또는 mywage@sanjoseca.gov로 밀피타스 시에 연락하셔도 좋습니다.